



2022년
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
조사지침서

2022. 11.



2022년
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
조사지침서

2022. 11.

조사지침서의 활용

- 본 조사지침서는 2022년 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조사원 교육용 교재입니다.
- 본 조사지침서는 조사원·조사관리자 준수 사항 및 가구관리 요령, 현장조사 요령, 조사표 작성 및 내검 요령 등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 조사원들께서는 조사대상 명부, 방문 가구의 비밀 및 정보 누설 금지에 관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원분들께서는 교육 시는 물론 현장 조사 시에도 항상 휴대하여 주시고 조사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한국통계진흥원 조사관리부(☎ 070-4128-32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 목차



조사개요

1. 조사목적	7
2. 법적근거	7
3. 조사대상 및 규모	8
4. 조사방법 및 기간	8
5. 모집단 및 표본설계	8
6. 조사내용	9
7. 조사체계	10
8. 조사일정	10



현장조사

1. 조사원의 자세와 유의사항	13
2. 조사 직원의 역할	15
3. 가구관리 요령	17
4. 현장조사 요령	21
5. 현장조사 안전수칙	26
6. 예상되는 질문과 응답 방법	29
7. 기타 사항	31



조사표 작성 요령

- 1. 조사표 구성 및 작성시 유의사항 35
- 2. 조사항목별 작성 요령 37



내용검토 및 정리·제출

- 1. 내용검토란? 69
- 2. 내용검토 사항 69
- 3. 조사표 편철 및 제출 69
- 4. 편철 조사표 수집 및 제출 70



부 록

- 1. 조사표 73

I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 2 법적근거
- 3 조사대상 및 규모
- 4 조사방법 및 기간
- 5 모집단 및 표본설계
- 6 조사내용
- 7 조사체계
- 8 조사일정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실태 파악
 - 주거복지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2 법적근거

- 조사실시: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0조(주거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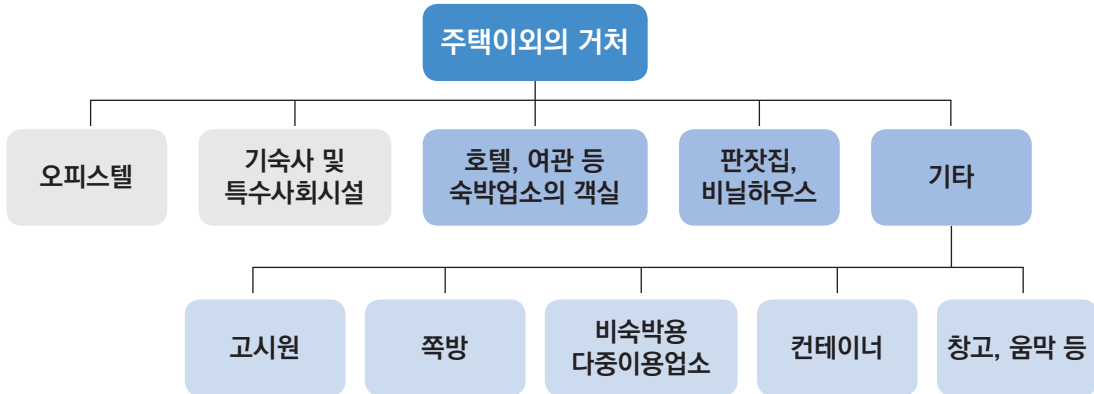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청년층
 5.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9. 그 밖에 주거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조사대상 및 규모

- 조사대상: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
 - ※ 취약계층이 거주한다고 보기 어려운 오피스텔과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제외
- 조사규모: 전국 10,000가구



4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필요시 자기기입식 병행)
- 기준시점: 2022. 11. 17. 0시
- 조사기간: 2022. 11. 17. ~ 12. 11.(기간 중 17일) • 준비조사: 11. 16.(1일)

5 모집단 및 표본설계

- 목표모집단: 2022년 전국 주택이외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조사모집단: 2020년 인구총조사 가구 중 주택이외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주택이외거처 중 오피스텔, 기숙사 제외, 섬 및 기숙·사회시설 조사구, 집단 및 외국인 가구 제외)
- 표본추출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리스트
- 추출 규모: 10,000가구 내외
- 추출 방법: 층화2단집락추출
 - 층화변수 : 시도(17) × 거처유형(4)* = 68개
 - ※ 거처종류 :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주거용 비닐하우스, 고시원(고시원·원룸텔), 기타(가설건축물(컨테이너, 판넬 또는 조립식건물, 농업용 온실 등), 다중이용업소, 기타)
 - 1차추출단위(표본조사구) : 조사구 내 주택이외거처 가구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
 - 2차추출단위(표본가구) : 표본조사구에서 가구를 계통추출



6 조사내용

- 총 5개 부문 46개 문항
 - 거처의 유형과 물리적 상태 8개 문항
 - 거주 여건에 인식과 어려운 점 11개 문항
 - 고용 상태와 생활 여건 6개 문항
 - 주거 및 사회복지 지원 요구도 13개 문항
 - 가구 기본사항 8개 문항

구분	내용
I. 거처의 유형과 물리적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처 종류 • 거주 층 • 가구의 사용 방 수 • 현재 거처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거처를 쪽방으로 인식하는지 여부 • 주거 전용면적 • 거처의 시설 형태
II. 거주 여건에 인식과 어려운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거처에서의 거주 기간 • 현재 거처에 거주하기 직전 거처에서의 거주 기간 • 현재 거처의 점유 형태 • 전세 보증금 • 월세 가구의 월세 • 월세 혹은 관리비 연체 경험 • 현재 거처에서 느끼는 어려움 • 현재 거처 이외 주택 보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거처에 거주하기 직전 거처의 거처 유형 • 자가 가구의 주택가격 • 월세 가구의 보증금 • 월평균 공과금과 관리비 • 현재 거처에서 거주하게 된 이유 • 현재 거처에 대한 만족도 • 현재 거처 이외 보유 주택에서의 거주 여건
III. 고용 상태와 생활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주의 고용 상태 • 월평균 가구 소득 • 현재 거처에서 계속 거주 의사 여부 • 현재 거처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이유 • 이주를 계획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소득 유형 • 현재 소득 수준 대비 생활 여건
IV. 주거 및 사회복지 지원 요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받은 경험 •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 •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 경험 •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 • 수급가구 여부 • 주거급여 수급 금액 • 비수급가구가 수급 신청을 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이유 • 비수급가구가 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 •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없는 이유 • 급여 종류별 수급 여부 • 비수급가구의 수급 신청 경험
V. 가구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주 연령 • 고령, 장애, 질병 가구원 유무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구성 • 가구주 주민등록 등재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수 • 가구 형태 • 가구주 혼인 상태 • 가구원 중 금융채무불이행자 유무

7 조사체계



8 조사일정

구분	단위업무명	일정	비고
조사준비	1. 세부 실시계획 수립	~10. 28.	한국통계진흥원 · LH토지주택연구원
	2. 조사원 채용	~11. 10.	한국통계진흥원 · LH토지주택연구원
	3. 조사용품 구매 · 배부	11. 14. ~ 11. 16.	한국통계진흥원
현장조사	4. 조사원 지침서 교육	11. 14. ~ 11. 16.	한국통계진흥원
	5. 준비조사	11. 16.	한국통계진흥원 지역본부
	6. 현장조사 실시	11. 17. ~ 12. 11.	한국통계진흥원
	7. 실사지도	11. 24. ~ 11. 30.	한국통계진흥원 · LH토지주택연구원
	8. 전화검증	11. 28. ~ 12. 9.	한국통계진흥원
자료처리	9. 조사표 입력 · 내검	12. 12. ~ 12. 30.	한국통계진흥원
	10. 조사표 제출	12. 30.	한국통계진흥원 지역본부 → 한국통계진흥원 조사관리부
	11. 1차 주요항목 집계	12. 30.	한국통계진흥원
	12. 종합 내검 및 조사결과 집계	1. 2. ~ 1. 31.	한국통계진흥원
제출	13. 결과물 제출	1. 31.	한국통계진흥원 → LH토지주택연구원

II

현장조사

- 1 조사원의 자세와 유의사항
- 2 조사 직원의 역할
- 3 가구관리 요령
- 4 현장조사 요령
- 5 현장조사 안전수칙
- 6 예상되는 질문과 응답 방법
- 7 기타 사항



II

현장조사

1 조사원의 자세와 유의사항

조사원의 성실한 조사업무 수행은 조사결과의 신뢰도, 타당성 제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여 올바르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조사원의 기본자세

- 조사원은 공손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도록 한다.
- 본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응답자가 적극 조사에 응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

- 조사기간 중에는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조사업무에 전념한다.
- 응답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단정한 복장을 하고 예절을 지켜 업무를 수행한다.
- 면접과정에서 응답을 유도하거나 주관적인 판단으로 조사해서는 아니 된다.
-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허위조사, 탁상조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면접조사 과정에서 잘 모르는 내용이 있는 경우 조사관리자와 문의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 조사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정상적인 조사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조사관리자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는다.
-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당은 조사원 도급계약서 산정 기준에 의한다.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내용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통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제39조(벌칙)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 ②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 받은 자
- ③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

- 조사표 미제출, 잔여 조사필수품 미제출 등 조사원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때는 징계 또는 형사고발, 민사상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징계), 제24조(징계의 종류)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2 조사 직원의 역할

조사관리자(조사센터장)의 역할

- 조사용품 관리 및 배부
 - 조사관리부로부터 조사용품(조사표, 지침서 등) 수령 후 조사원에게 배부한다.
 - 조사표류(조사표, 협조공문, 안내장 등)는 조사원별 조사 진척률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배부한다.
- 조사원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 지도
 - 조사원별 조사 진척률을 파악하고 조사가 부진한 조사원을 독려한다.
 - 「조사대상 명부」의 방문기록부를 확인하고 조사원의 활동상황을 점검한다.
 - 중도 포기 조사원에 대해서는 지역본부 또는 조사관리부 담당 직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사원을 대체하고 방치된 대상가구가 있는지 수시로 파악한다.
 - 교육 받은 조사원이 직접 조사를 하는지 수시로 파악하고, 다른 사람이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에 즉시 보고 후 조치한다.
 - 조사기간 중 조사원이 조사에 전념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한다.
 - 설문문항 중 조사지침서로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항은 지역본부 또는 조사관리부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한다.
 - 조사 불응 또는 비협조적인 가구 및 조사대상이 있는 경우 조사원과 함께 방문하여 설득 조사를 한다.
 - 조사원이 불가피하게 자료 입력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표를 검토하고 조사원 대신 자료를 입력한다.
- 조사표 내용검토 및 전달사항 시달
 -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조사원별로 수시로 접수하여 내용을 검토한다. (주1회 이상)
 - 검토된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조사원에게 보완토록 지시한다.
 - 수시로 시달되는 조사 관련 지침을 조사원에게 전달한다.
- 조사표류 취합 및 관리
 - 조사표류를 취합하여 편철하고, 조사필수품 지급 내역을 확인한다.

지역본부의 역할

- 조사관리자와 조사원을 관리 지도한다.
- 조사표류 및 조사용품을 배부한다.
- 조사대상 명부를 관리한다.
- 불능·불응에 대한 지침을 전달한다.
- 필요 시 조사가구를 설득하는 등 조사관리자의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 조사표류를 최종 접수하고, 조사필수품 지급 내역을 재확인한다.

조사원의 역할

- 조사용품을 수령하고 조사원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필수)

조사용품

- | | | |
|--------------|-------------|----------------|
| 1. 조사대상 명부 | 2. 조사표 | 3. 조사지침서 |
| 4. 답례품 지급대장 | 5. 비밀보호용 봉투 | 6. 조사원증 |
| 7. 협조공문, 안내장 | 8. 필기도구, 가방 | 9. 방문안내장(포스트잇) |

- 협조공문, 안내장은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한국통계진흥원 홈페이지(<http://stat.or.kr>)에서 출력하여 사용한다.
- 「조사대상 명부」의 방문기록부란에 조사대상 가구별로 조사활동 내역을 기입한다.
- 「조사대상 명부」에서 잘못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올바르게 수정하고 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대상 명부」는 조사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하므로 보관을 철저히 한다.
- 가구 방문 시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 자기기입식조사를 병행한다.
- 조사가 종료되면 응답자 연락처를 확인한 후 조사답례품을 지급하고 「조사답례품 지급대장」의 수령자란에 서명을 받는다.
- 작성이 완료된 조사표는 조사관리자에게 내용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고 미흡한 조사표는 보완해야 한다.



3 가구관리 요령

가. 기본개념

(1) 가구

-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의미한다.

가구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

- ❖ 주민등록상 세대: 주민등록상 세대는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포함하는 가구와 개념이 다르다.
- ❖ 가족: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이나 가구는 혈연관계와는 상관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이다.

(2) 가구주

- 가구주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의미한다.
 - 생계책임자는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사람이다.

(3) 가구원

- 가구원은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되며,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제외한다.
 - 먼 친척, 친구, 가정부, 종업원 등 가족이 아닌 사람도 함께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한다.
 -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최근 3개월 이상 되었고 조사당시에도 함께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된다.

〈 가구원명부 포함 여부 〉

포함 대상	제외 대상
1. 출장이나 여행으로 잠시 집을 떠나 있는 가구원 2. 잠시 친척집에 가 있는 가구원 3. 일반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및 보호자인 가구원 (기간 불문) 4. 3개월 미만 거주 예정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가구원	1. 취업, 취학 등으로 외지에서 하숙, 자취하거나 기숙사에 있는 가구원 2. 보육원, 노인요양시설, 모자원 등의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가구원 3. 선박, 항공기, 철도 등의 승무원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원 4. 구직, 무단가출 등으로 정착여부를 알 수 없는 집을 떠난 지 1개월이 넘는 가구원

나. 조사대상

(1) 조사대상

- 조사대상은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 중에서 표본을 선정한다.
 ※ 취약계층이 거주한다고 보기 어려운 오피스텔과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제외

(2) 가구대체

- ‘불응’, ‘불능’ 의 사유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방문결과코드를 작성하고 조사대상 명부의 대체표본층에서 대체하여 조사한다.

(3) 조사대상 명부

- 변경사항은 두 줄로 그은 후 정정한다.(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조사대상 명부 작성 예시〉

NO	대체 순위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	도로명 주소	가구주 성명	방문기록부				
							방문 횟수	방문 날짜	방문 시간	방문 결과 코드	비고 (불응, 불능 사유 등)
1	원표본	001	001	001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송현공원로 62번길 1	김*민	1차	11.17.	16	22	현관문 잠김
							2차	11.20.	17	22	현관문 잠김
							3차	11.21	17	22	현관문 잠김
							4차				
1순위	001	002	002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인중로 614	이*진	1차	11.22.	19	11	20	
						2차					
						3차					
						4차					
2순위	001	003	003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인중로 621	최*순	1차					
						2차					
						3차					
						4차					
2	원표본	002	001	001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난계로13길 10-7	박*영	1차	11.21.	16	22	현관문 잠김
							2차	11.22.	17	34	정부불신
							3차	11.23.	17	34	정부불신
							4차	11.24.	16	34	정부불신
1순위	002	002	002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인중로 621	최*순	1차	11.30.	19	43	빈집	
						2차					
						3차					
						4차					
2순위	002	003	003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난계로13길 10-7	박*영	1차	12.1.	15	11	30	
						2차					
						3차					
						4차					

(4) 방문기록부 작성 요령

- ‘조사원은 조사대상 가구의 방문을 마친 후 조사대상 명부의 방문기록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가구를 여러번 방문하는 경우 각 회차별로 방문기록부에 기입한다.
 - 다만, 3차 이상 방문한 경우는 최종 방문결과를 3회차에 기입한다.
 - 방문시간은 24시 형태로 기입한다(예: 오후 6시 → 18시).
 - 방문결과 완료인 경우 비고란에 조사 소요시간을 분단위로 기입한다.
- ‘방문결과코드는 아래표에 있는 「방문결과코드」를 참고하여 조사완료, 불응가구, 불능가구 등 해당되는 코드를 기입한다.
- ‘기타일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 방문결과 코드 〉

결 과	코 드	방문결과	
조사완료	11	조사대상 가구가 해당 조사표에 모두 응답함	
불응가구 (거부가구)	21	사생활 노출 기피로	
	22	바쁘거나 귀찮아서	
	23	가정불화, 정부불신 등 기타	
	24	안전사고 예방	
불 능	불능가구	31	빈방·빈집으로 가구가 비어 있음(아무도 살지 않음)
		32	현관문 잠김, 경비제재 등으로 가구 접촉이 불가능
		33	주소 불명확 등 기타 (재개발, 타용도 사용 등)
	대상 외	35	조사대상(주택 이외의 거처)이 아님
	가구전출	36	이사, 분가
	중 복	37	가구 중복
기 타	91	재방문 요청	
	99	기타()	



4 현장조사 요령

가. 면접조사 요령

(1) 가구를 방문하기 전

- 조사표의 구성 및 순서, 항목별 지침을 충분히 숙지한다.
- 조사용품이 잘 준비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사원증, 조사대상 명부, 조사표, 지침서, 조사 안내문, 비밀보호용 봉투, 조사답례품 및 지급명부, 사무용품, 방문안내장 등
- 조사표를 스스로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기를 원하는 응답자가 있을 때에는 비밀보호용 봉투를 같이 배부한다.

(2) 가구를 방문할 때

- (조사대상 확인) 방문하는 곳이 조사대상(주택 이외의 거처)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고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방문기록부에 방문결과코드 '35.대상외-조사대상(주택 이외의 거처)이 아님'을 기입하고 다른 조사대상을 조사한다.
- (응답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행동 금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올바른 언행을 사용하여 응답자가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며, 조사 수행 중에는 항상 조사원 신분증이 잘 보이도록 패용한다.
- (가능한 응답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 지역 특성에 따라 가구방문 시간대를 정하며, 가구와 약속한 방문일자와 시간은 반드시 준수한다.
 -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시간은 가급적 피하고 가능한 낮시간에 완료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방문한다.
 - 방문가구가 상가지역에 있으면 혼잡한 시간은 피해서 방문한다.
 - 아파트, 연립 등의 조사 시에는 관리인에게 알리도록 한다.
 - 대문이나 현관문이 열려 있더라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면접조사 시 유의사항

- ❖ 방문한 시간이 식사시간이나 응답하기 곤란할 때에는 다른 가구부터 조사할 수도 있다.
 - ☞ 이렇게 저녁식사 하시는데(또는 다른 이유를 들고)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다른 가구를 조사하고 나서 한 20분 후에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 ❖ 조사와 관련이 없는 말은 가급적 피해야 하지만 조사시작 전에는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상대방의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일상적인 대화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이끈다.
 - ☞ 집안이 참 깔끔하시네요, 집안일은 해도 표시가 안나는 일인데 부지런하신가 봐요.
 - ☞ 아이가 참 귀엽네요! 저도 이만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애가 몇 살인가요?

(3) 가구원을 만났을 때

- (조사안내문 제시) 어디에서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먼저 밝히고, 조사의 목적과 조사된 자료가 추후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여 응답자가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응답자가 답변을 거부할 경우) 조사원의 태도가 중요하므로 불쾌한 말을 듣더라도 침착하고 겸손해야 한다.
 - 응답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불신하는 이유나 응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 등을 충분히 듣고난 후, 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 최선을 다하여 응답자를 설득하였지만 계속 응답거부를 할 경우에는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적당한 시기에 일단 물러나야 하며 조사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 (비밀보호 강조) 이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작성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고, 법으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
- (공손한 태도와 언어의 사용) 존댓말을 사용하되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을 써야 하며, 너무 빨리 말을 하면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므로 가급적 또박또박 천천히 말한다.
 - 면접 중에 응답자가 얘기를 할 때 “예, 그렇겠군요.”, “그럴 땐 힘드셨겠어요.” 등의 추임새로 공감 표시를 한다.
 - 응답자의 응답을 보았을 때, 질문을 잘못 이해하거나 의미 전달이 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단 응답을 받아들인 후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대답해 주시겠습니까?”라고 양해를 구한 후 재질문한다.
 - 응답자의 대답을 되풀이하여 얘기를 해 주고, 대답이 모호하거나 일관성이 없을 때에는 한 번 더 질문하여 명확한 답을 하도록 한다.



- 질문을 할 때와 답변을 들을 때는 응답자와 시선을 마주치도록 노력한다.
 - ※ 시선을 마주치는 것은 응답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가 진지하게 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큰 효과를 낼 수 있음
- (불필요한 질문이나 행동 금지) 이웃이나 다른 가구원이 있는 곳에서 조사하는 것은 피하며, 조사에 불필요한 질문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다.
 - 조사원과 응답자 이외에 제3자인 가족, 친구, 이웃사람 앞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응답자와 둘이서만 조사를 진행한다.
 - 응답자가 조사에 응해 주기로 하였다면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한다.
- (민감한 사항에 대한 질문) 소득, 교육수준, 혼인상태, 채무, 기초생활수급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감한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모든 질문을 할 때에 같은 어조로 물음으로써 응답자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한다.
 - 응답자가 거짓말 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에도 우회적으로 한 번 더 질문을 하여 정확한 응답이 나오도록 재질문한다.
 - 응답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할 수 없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하고 시간을 두고 보완하도록 요청한 뒤에 조사표를 회수할 재방문 일시를 약속한다.
- (마무리) 면접이 종료되면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기입내용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게 작성되었는지, 항목 간에 상충된 내용은 없는지 그 자리에서 꼼꼼히 확인한다.
 - 조사를 완료하기 전에 응답자가 좀 망설이면서 답변했거나 확실치 못한 추상적인 답변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해 둔다.
 - 자기기입식 조사표를 회수할 경우에는 약속 시간을 정하여 해당 일시에 꼭 방문을 하여 회수하며, 조사표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한다.
 - 자기기입식 응답자는 익명성을 요구하는 응답자가 많으므로 비밀보호용 봉투의 필요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배부한다.
 - 응답자에게 조사답례품을 지급하고 지급대장을 작성한다.
 - 조사가 끝났더라도 끝까지 친절한 태도를 잊어서는 안 되며, 정중하게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한다.

나. 조사답례품 지급

- 조사답례품은 상품권으로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므로 철저히 관리한다.
- 응답을 완료한 가구에는 답례품을 지급한다.
 - 조사표 작성을 완료하고 기입 내용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지급한다.
 - 조사답례품 지급대장에 정자로 지급 내역을 기재하고, 수정 시에는 적색으로 사선을 그은 후 기재한다.
 - 잘못 지급되었을 경우 반드시 회수하여 정산내역과 배부·지급·잔량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 협조용 답례품은 필요 시 조사관리자에게 수령하여 지급하되, 지급 적정성 여부는 조사관리자의 판단 하에 지급한다.
 - 지급대장에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예: ○○통장, 반장, 고시원총무 등)
 - 사용하지 않은 협조용 답례품은 반납 처리한다.

다. 비밀보호용 봉투 사용

-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조사할 경우, 조사담당자 이외 사람에게 조사표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표와 함께 배부하고 봉투에는 조사원의 연락처를 적어준다.
- 약속한 날짜에 회수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보호용 봉투는 조사담당자, 조사관리자, 조사원만 개봉한다.

라. 조사불응, 장기부재 등에 대한 대응방법

(1) 불응(조사 거부)

- 불응은 사생활 노출 기피, 가정 내 사정·불화(실직, 부부 이혼 등), 조사부담 과중, 바쁘거나 귀찮아서, 정부 불신 등으로 응답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응답자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나 의지와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기본적으로 조사에 무관심한 경우가 있다.
- 조사원은 조사대상 가구를 반드시 3회(1일 1회 기준)이상 방문하고, 그래도 응답을 거부할 경우 조사관리자와 동행하여 설득한다.
 - 통계조사 응답은 국민의 사회적 책임이자 권리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 통장, 건물 관리사무소, 이웃을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
 - 비밀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밀보호용 봉투에 조사표와 기입요령을 넣어 배부 및 회수(비밀보호용 봉투 뒷면에 조사원 이름, 연락처를 기입하여 배부)한다.



-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응 가구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원은 지체 없이 조사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를 통보받은 조사관리자는 사실 여부 확인 후 방문기록부에 사유를 기입하고 불응처리 한다.
- 응답자의 신체적 위협이 있었을 경우는 조사관리자 판단 하에 “24. 안전사고예방”으로 처리하고 추가설득을 생략할 수 있다.
 - 현장조사 중간보고 시 해당 내용을 상세히 보고한다.

(2) 불능(장기 출타, 빈집 등)

- 불능은 장기출타(출장, 취업, 교육 등), 입원, 장애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 가구원 모두 부재 중인 경우에는 옆집이나 이웃 등에게 수소문하여 확인하고, 3회 이상 (1일 1회 기준) 방문하여도 만나지 못하거나 해당 가구가 빈방·빈집인 경우는 “31. 빈방·빈집으로 가구가 비어 있음(아무도 살지 않음)”로 처리하며 거처가 재개발 지역, 철거 지역, 또는 타용도 사용 등의 경우는 “33. 주소 불명확 등 기타(재개발, 타용도 사용 등)”로 처리한다.

5 현장조사 안전수칙

조사원은 가구에 방문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므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 통계조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본 사항

- 조사지역 확인
 - 조사대상 지역의 지형, 주택배치, 개를 기르는지 여부, 교통량, 경찰 지구대·파출소 등 조사담당지역의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한다.
- 비상연락처 확보
 - 조사 중 긴급 상황이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연락처(지역센터장, 조사관리자, 인근지구대)를 메모하여 필요 시 즉시 연락한다.
- 본인 일정 공유
 - 조사 당일의 방문 예정지를 가족 및 지인, 조사관리자 등에게 알리고, 조사 도중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반드시 알린다.
 - 조사관리자는 담당 조사원의 당일 조사일정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조사활동에 적합한 복장
 - 조사활동에 적당한 의상과 신발을 착용하고, 화려하거나 노출이 심한 의상, 지나친 화장, 종교·사회단체 배지 부착 등은 피하도록 한다.
- 도급조사원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여 상해 사고에 대비할 것을 권고한다.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유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개인위생수칙 철저히 준수
 - ② 매일 아침 조사관리자에게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여부 체크 후 보고 → 의심 증세 있는 경우 조사 중지
 - ③ 가구 방문 및 면접조사 진행 시 마스크 및 일회용 장갑 착용, 손소독제, 소독티슈 항시 구비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조사 진행
 - ④ 조사업무 중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 19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조사를 중단한 후 귀가
 - 증상이 지속될 경우 코로나 19 검사 진행
 - (양성일 경우) 현장 조사 즉각 중단 → 조사관리자에게 연락 → 방문 가구 연락
 - (음성일 경우) 음성 확인증 제시 후 조사 복귀



- (응답자가 양성인 경우) 해당 조사원 등 자가 진단 실시 → 검사 결과에 따라 위의 절차 진행

나. 안전사고 예방법

※ 조사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는 사고에 주의
 - 도로의 높낮이, 구덩이, 하수구에 주의한다.
 - 철제계단 등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주의하며, 비가 올 때나 야간에는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 개 물림 사고에 주의
 - 개를 기르는지, 개 줄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방문한다.
 - 작은 개라도 본능적으로 무는 습성이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 교통사고에 주의
 - 자전거 사용 시 몸에 잘 맞는 것을 사용하고, 자전거의 운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저녁이나 야간조사는 특히 주의한다.
 - 비오는 날에는 자전거 및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으며, 차량은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 차량을 이용할 때는 주변의 교통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운전을 하도록 한다.
- 조사관련 서류가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 조사 관련 서류(조사표, 조사대상 명부 등)를 분실하지 않도록 항상 휴대하고, 특히 조사 완료된 조사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 가구는 가능한 밝을 때 방문한다.
 - 부득이 야간 조사 시 조사관리자 등 동행자와 함께 수행한다.
 - 조사 중 불안감을 느낀다면 망설이지 말고 되돌아가야 한다.
 - 항상 안전용품(호신용 경보기, 손전등 등)을 휴대하여 위험 시 활용한다.

다. 가구 방문 시의 안전 수칙

- 적절한 방문 시간 선택
 - 응답자가 가능한 시간을 확인하여 불편한다 없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조사원증 제시
 - 가구 방문 시 먼저 조사원증을 제시하여 현장 조사원임을 명확히 알려주도록 한다.
- 예의 바른 태도
 - 고압적인 말투, 음주 후 방문, 정치·종교 등의 불필요한 대화는 피하도록 하며, 응답 대상자의 언행이 다소 불쾌하더라도 화내거나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공동주택 조사 시 관리인에게 알림
 - 공동주택 조사구의 경우 관리인에게 미리 협조를 요청하여 조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위험 발생 시 큰 소리로 도움 요청
 - 면접 중 응답대상자의 태도 또는 방문 도중 어떤 불안감을 느낄 때에는 되돌아가도록 하고, 그 상황에 대해 조사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

1. 사고가 일어나면, 신속히 연락

- 만일 사고로 부상이 생긴 경우에는, 지역센터장에 상황을 연락하여 설명해야 한다.

2. 긴급시 연락처

※ 한국통계진흥원 상황실 ☎ 042-484-9555, 070-4128-3227

● 긴급 전화번호(국번없이 전국 동일)

- 범죄 신고 : ☎ 112
- 긴급재난·구급차 : ☎ 119
- 응급 의료상담 : ☎ 1339
- 여성긴급전화 : ☎ 1366
- 182 경찰민원 콜센터 : ☎ 182



6 예상되는 질문과 응답 방법

Q '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는 무엇입니까?

- ▣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실태를 파악하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조사입니다.

Q 어디서 조사합니까?

- ▣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연구·기획)과 한국통계진흥원(실사·조사설계)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에 꼭 참여해야 합니까?

- ▣ 귀댁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선생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전체 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되어 결국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 응답을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응답하여 조사결과가 부정확하면, 이를 근거하여 추진한 정부정책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법(제32조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통계응답자의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 응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지금 바쁘셔서 응답하기 어려우시면 편리한 시간에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Q 내가 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까?

- ▣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조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대표할 수 있는 일부 가구를 표본으로 뽑아 조사합니다.
- ▣ 조사대상 가구는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거쳐 선정되는데, 핵심은 모든 가구가 표본으로 선정될 확률이 동일하도록 설계된 통계기법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출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전체 가구에 대한 유의미한 통계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 조사원의 신분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 ▣ 한국통계진흥원에서 조사원의 신분을 보증하므로, 원하신다면 전화를 통해 해당 조사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개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 ▣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습니다.
- ▣ 조사된 내용은 전산 처리되어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식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름을 작성하는 이유는 나중에 조사내용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연락하기 위해서입니다.

Q 조사된 자료가 과세자료 등 여타의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나요?

- ▣ 한국통계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통계조사 자료는 과세자료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통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통계법 제33조).
- ▣ 위 사항을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통계법 제39조).

Q 국토교통부는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 ▣ 대한민국의 국토와 사회간접자본(SOC)의 관리 및 계획·개발, 건설, 교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Q 한국통계진흥원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 ▣ 한국통계진흥원은 국민의 통계인식을 제고하고 통계의 개발·개선과 기술향상을 통하여 통계산업의 발전과 통계 인프라 강화 증진을 위해 조직된 통계청 산하 비영리 기관입니다.

Q 누가 조사를 하나요?

- ▣ 현장조사는 한국통계진흥원에서 면접, 신원조회 등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채용하여 교육시킨 조사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국통계진흥원 지역본부 관리자를 통해 현장을 지도하고 관리합니다.



7 기타 사항

- 본조사는 CAPI(Computer Assistant Personal Interview) 조사와 종이설문 조사(유치조사)를 병행하는 조사로 주요 조사 방법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조사이나 조사대상 특성을 고려하여 종이설문을 통한 유치조사를 병행합니다.
 - 유치조사는 응답자 접촉이 어려울 경우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며 기본적인 조사 형태는 CAPI 조사입니다.
 - 조사 불응 시 최대한 설득하여 조사해야 하며 조사 비협조시 조사센터장에게 보고 후 대응하여야 합니다.
- 조사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명부의 모든 조사대상을 방문하여 조사를 해야 한다.
- 조사원은 유치조사 설문을 받으면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설문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종이조사표 응답 내용 중 오류 사항을 빠르게 발견하여 바로 잡아내기 위함입니다.
- 조사원은 조사대상 명부 정정사항과 방문기록부 기입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 조사관리자(지역센터장)은 조사대상 명부와 방문기록부가 전산시스템에 입력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입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완 및 관리해야 합니다.

Ⅲ

조사표 작성 요령

- 1 조사표 구성 및 작성 시 유의사항
- 2 조사항목별 작성 요령



Ⅲ

조사표 작성 요령

1 조사표 구성 및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조사표 구성

- 조사표는 크게 5개 부문과 4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구성 항목

- I. 거처의 유형과 물리적 상태
- II. 거주 여건에 인식과 어려운 점
- III. 고용 상태와 생활 여건
- IV. 주거 및 사회복지 지원 요구도
- V. 가구 기본사항

나.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1) 조사표 작성 시

- 기본적으로 조사문항에 대한 응답은 ‘개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조사대상 가구원 본인을 직접 만나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단, 코로나 등으로 인해 면접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유치조사를 안내한다.
 -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할 경우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표 기입 요령을 충분히 설명한다.
- 조사대상 방문 전에 조사표 표지의 주소, 조사원 정보 등 기본 사항을 사전에 기입한다.
- 응답자에게 조사내용(설문문항 등)을 설명하면서 조사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
- 조사표 작성은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도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 조사표 수정 시 정정사항은 두 줄로 그은 후 정정하도록 한다.
- 조사표는 깨끗할 필요는 없으나 정자체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기입한다.
- 각 항목별로 응답항목에 ‘✓’ 표시하며, 해당 번호가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한다.
- 조사표 작성 후 현장에서 조사항목의 누락 및 착오 사항 등을 점검한다.

- 내용검토 기간 중 응답 가구에 다시 질의하는 경우 조사에 관한 전체 내용을 다시 이해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에서 점검한다.
- 응답자에 따라 해당되지 않은 항목은 사선 처리하고,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기입을 계속 진행한다.

(2) 조사표 회수 시(자기기입식)

- 배부한 조사표를 조속히 회수하여 조사표의 분실을 방지합니다.
- 조사표 회수 시 현장에서 바로 조사항목의 누락 및 착오 사항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 조사를 실시한다.
 - 자기 기입식으로 작성된 조사표는 항목 기입 누락 및 착오 사례가 자주 발견되므로 조사표 회수 시 반드시 조사표를 꼼꼼히 검토한 후 회수하도록 합니다.
- 회수 후 조사표에 착오 사항이나 누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나 재방문하여 보완 합니다.

(3) 관리 철저

- 조사표는 응답자의 중요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하고, 완료 조사표는 작성되는 즉시 조사관리자 또는 조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내용을 검토 받는다.



2 조사항목별 작성 요령

I. 거처의 유형과 물리적 상태

1 귀택이 현재 거주하는 **거처의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5는 주거 공간이 일터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 1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 2 판잣집, 비닐하우스
- 3 고시원·고시텔
- 4 다중이용업소: 노래방, PC방, 사우나, 유흥시설 등
- 5 일하는 곳의 일부 공간
(예: 주유소, 미장원, 세탁소, 편의점, 마트, 민박집, 음식점 등 식당 건물 내 일부)
- 6 기타 ()
(예: 학교나 학원 건물, 보건소, 주민센터, 경로당, 성당, 교회, 사찰 등)

1-1 귀택이 거주하는 거처는 컨테이너, 조립식 판넬, 비닐 등으로 지어진 임시 가건물이십니까?

- 1 그렇다
- 2 아니다

❖ 현 거처의 유형

- 현재 살고 있는 거처의 종류를 확인한다.
※ 2022년 11월 17일 기준, 현재 살고 있는 거처의 종류를 작성한다.
- 3 명부 상의 거처의 유형이 다른 경우일지라도 현재 거처의 간판이 고시원, 고시텔인 경우는 3으로 응답한다.
- 4 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이곳에서 상당기간의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별도의 주거용 거처가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5 는 주거 공간이 일터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건물 보일러실의 일부 공간, 농막이나 어장에 방을 내어 살고 있는 경우이다.

❖ 임시 가건물 여부

- 현재 살고 있는 거처가 컨테이너, 조립식 판넬, 비닐 등으로 지어진 임시 가건물인지 확인한다.

2 귀택은 현재 거처를 **쪽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쪽방은 주로 단신자가 거주하는 좁은 방으로, 독립된 부엌과 화장실이 없으며, 판자집, 고시원, 여관·여인숙 등 형태가 다양합니다.

- 1** 예 **2** 아니오

- ❖ **쪽방 여부**
- 쪽방은 법적으로 정의된 거처의 유형은 아니며 실제 주택유형이 일반 주택, 여관·여인숙 등의 숙박업소, 고시원의 형태일 수 있다.
 - 쪽방상담소의 지원을 받거나 거주자가 쪽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쪽방으로 조사한다.

3 귀택이 거주하는 거처의 **위치(층수)**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1** 지상 **2** 지하(반지하) **3** 옥상(옥탑방)

- ❖ **거주 층**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위치(거주층)에 대해 조사한다.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지상과 (반)지하 등 복수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취사 및 취침 공간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 ① 지상: 1층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
 - ② 지하(반지하)
 - 지하: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이상인 경우
 - 반지하: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해당 층의 1/2 미만인 경우
 - ③ 옥상(옥탑방): 건물 옥상에 설치된 주거공간

4 귀택이 거주하는 거처에서 **실제 귀택 가구가 사용하는 거주용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가구가 주거에 이용하는 부분만 기입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공용시설에 대한 면적은 제외하며 고시원, 숙박업소 등은 방의 면적을 기입합니다.

거주용 실면적 m² 또는 평 (1평 = 3.3m²)

- ❖ **거주 층**
- 부분에 숫자를 정자로 기입한다.
 - 가구가 사용하는 화장실, 욕실 등이 건물외부에 있는 경우 그 면적을 포함한다.



- 일부 공간을 다른 가구에 세를 준 경우 세를 준 면적은 제외한다.
 - 응답자가 면적을 잘 모를 경우에는 부동산종합포털(www.onnara.go.kr)을 참조하여 기입이 가능하다.
 - 기존에 사용되던 단위인 '1평'은 3.3㎡에 해당되므로, 평으로 응답한 경우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 ※ CAPI조사의 경우, 시스템에 입력 시 입력단위(평, 제곱미터) 중 하나를 입력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변환되어 입력된다.

5 귀택이 거주하는 거처에서 **귀택이 실제 사용하는 방**은 몇 개이십니까? (거실, 부엌, 욕실 등은 제외)

1 원룸형

2 방 1개

3 방 2개

4 방 3개

5 방 4개 이상

❖ **원룸형 여부 및 방의 개수**

- 방이란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고, 높이는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1.8m(6척) 이상, 넓이가 3.3㎡(1평) 이상인 거주 공간으로서, 취침용, 서재, 놀이방으로 이용되는 공간을 말한다.
 - 단순히 물건을 쌓아 놓거나(창고 기능) 사용하지 않는 방과 통로, 베란다, 로비, 욕실, 화장실, 지하창고 등은 방으로 보지 않음
 - 다락은 방의 요건을 갖추고 사람이 실제로 지내고 있는 경우에만 방으로 포함
- 거실이란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으며, 휴식·오락·식사·가사·육아·접대 등 다목적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원룸형은 침실, 거실, 주방이 벽 또는 문에 의해 차단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하나의 독립된 공간 안에 전부 모여 있거나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주거형태를 말한다.

6 귀택이 거주하고 있는 **거처의 시설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난방시설에 전기담요나 전기난로 등의 전열기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설 종류	시설유무 및 종류	사용형태 및 사용여부
1) 부엌	① 입식 <input type="checkbox"/> ② 재래식 <input type="checkbox"/> ③ 없음	<input type="checkbox"/> ① 단독사용 <input type="checkbox"/> ② 공동사용
2) 화장실	① 수세식 <input type="checkbox"/> ② 재래식 <input type="checkbox"/> ③ 없음	<input type="checkbox"/> ① 단독사용 <input type="checkbox"/> ② 공동사용
3) 목욕시설	① 온수 <input type="checkbox"/> ② 비온수 <input type="checkbox"/> ③ 없음	<input type="checkbox"/> ① 단독사용 <input type="checkbox"/> ② 공동사용
4) 난방시설	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input type="checkbox"/> ① 사용 <input type="checkbox"/> ② 미사용
5) 소방 기구	① 있음 (소화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화재 감지 및 진압을 위한 장치) ② 없음	
6) 출입구(현관문)	① 단독 사용 ② 공동 사용	

❖ **현재 거주 주택의 시설별 사용형태**

- 주택시설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시설을 기준으로 응답한다.
- 공동사용은 해당 가구 내 가구원과의 공동사용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구가 함께 쓰는 것을 의미한다.

■ **부엌**

- 입식 : 조리시설, 싱크대 등 현대식 시설을 갖춘 부엌
- 재래식 : 재래식 아궁이를 갖추고 있는 부엌
- 사용 형태를 ①, ②라고 응답한 경우, 반드시 시설 종류에 대해 응답을 받는다.

■ **화장실**

- 수세식 : 정화조를 갖추고 수도시설에 의하여 배설물을 씻어 내리는 시설



- 주택 내에 화장실이 없어 외부의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③ 없음’에 응답한다.
- 사용 형태를 ①, ②라고 응답한 경우, 반드시 시설 종류에 대해 응답을 받는다.

■ 목욕시설

- 주택 내 목욕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과 시설(욕조 혹은 샤워기, 수도꼭지 등 유무)
- 사용 형태를 ①, ②라고 응답한 경우, 반드시 시설 종류에 대해 응답을 받는다.

■ 난방시설

- 난방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비용에 관계없이 주로 사용하는 것 하나만 기입한다.
- 사용 형태를 ①, ②라고 응답한 경우, 반드시 시설 종류에 대해 응답을 받는다.

■ 취사 연료

- 밥을 지을 때 사용하는 연료만을 응답한다.
- 도시가스 : 도시에 있어서 가정용이나 소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가스
- 사용 형태를 ①, ②라고 응답한 경우, 반드시 시설 종류에 대해 응답을 받는다.

■ 소방기구

- 소방기구란 소화기, 소화전, 단독 경보형 감지기(화재경보기), 기타(스프링클러 등)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거나 감지하기 위한 장치 및 기구를 말한다.
- 소방기구가 ‘① 설치되어 있음’인 경우, 반드시 소화기, 화재경보기, 소화전, 기타(스프링클러 등) 각 소방기구별로 유무를 확인한다.
- 소방기구 사용 종류(①~④) 중 하나라도 응답한 경우 시설 유무에서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응답할 수 없다.



■ 출입구(현관문)

- 출입구란 문을 열었을 때 집 내부가 나오는 문을 의미한다. (대문이나 통로/중앙현관의 개념과 다름)
 - 예시) 공동주택의 경우 중앙현관이 아닌 별도로 각 호마다 있는 독립된 현관문의 경우 '①단독 출입구'에 응답
 - 예시) 일반 단독주택에 세 들어 사는 경우, 본인 가구만 이용하는 출입문이 없고, 주인 가구가 사용하는 출입문을 거쳐야만 될 때에는 '②공동 출입구'에 응답

7 귀택이 거주하는 거처의 물리적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거주 면적이 생활하기에 비좁다	①	②	③	④	⑤
2) 창문이 없거나 작아 채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실외(차량 등) 및 실내(옆방, 옆집, 복도, 층간)의 소음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습기와 곰팡이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환기가 잘되지 않고 악취(담배연기, 음식냄새, 하수구 냄새, 매연 등)가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쥐나 바퀴벌레 등으로 위생 상태가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7) 천장, 벽 등에 곰이 가고 물이 새는 곳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건물이 낡아서 붕괴 위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화재의 위험성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10) 난방이나 단열 상태가 좋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 **현 거처의 물리적 상태 평가**

- 현 거처의 물리적 상태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단계로 구분해 응답자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조사한다.



II. 거주 여건에 인식과 어려운 점

8 귀택은 현재 거처에 거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현 거처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년 월부터이다.

- ❖ **현재 거처에서의 거주 기간**
 - 네모 칸 안에 숫자로 정자로 기입한다.
 - 현재의 거처에서 가장 먼저 살기 시작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9 귀택은 현재 거처에 거주하기 직전에는 어떤 거처 유형에 거주하셨습니까?

- 1** 일반 단독주택 **2** 다가구 단독주택 **3** 다세대 및 연립주택 **4** 아파트
- 5** 점포(상가) 건물내 주택 **6** 오피스텔 **7** 기숙사, 특수사회시설
- 8** 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 **9** 판잣집, 비닐하우스 **10** 고시원·고시텔
- 11** 다중이용업소: 노래방, PC방, 사우나, 유흥시설 등
- 12** 일하는 곳의 일부 공간 (예: 주유소, 미장원, 세탁소, 편의점, 마트, 민박집, 음식점 등 식당 건물 내 일부)
- 13** 기타() (예: 학교나 학원 건물, 보건소, 주민센터, 경로당, 성당, 교회, 사찰 등)

9-1 (문 **9** 번 **8** ~ **13** 에 해당하는 경우 응답) 귀택은 여기서 얼마나 거주하셨습니까?

년 월 ~ 년 월 까지 거주

- ❖ **현재 거처 이전에 거주했던 거처의 유형**
 - 현재 거처에 거주하기 직전의 거처에 대한 거처 유형에 대해 작성한다.
 - 이전 거처가 없는 경우는 '기타'로 응답하고 ()안에 이전 거처 없음으로 기입한다.
- ❖ **현재 거처 이전에 거주했던 거처에서의 거주 기간**
 - 응답자가 **9** 번 문항에서 **8** ~ **13** 번 보기에 응답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 네모 칸 안에 숫자로 정자로 기입한다.
 - 현재 거처 이전에 거주했던 거처에서 조사대상이 거주했던 기간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10 귀택이 현재 거주하는 거처의 점유 형태와 가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점유 형태		가 격	
건물 소유	① 자가	건물 가액 ¹⁾	<input type="text"/> 억 <input type="text"/> 만원
	② 전세	보증금	<input type="text"/> 억 <input type="text"/> 만원
임 차	③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	<input type="text"/> 억 <input type="text"/> 만원
		월세	<input type="text"/> 만원
	④ 보증금이 없는 월세	월세 ²⁾	<input type="text"/> 만원
	⑤ 사글세 혹은 일세	월세 ³⁾	<input type="text"/> 만원
⑥ 무상 거주		-	

- 1) 건물가액은 해당 건물을 2022년 10월말 기준으로 판다고 가정할 때 주변 시세(매매가)를 말함
 2) 고시원·고시텔 등 매달 월세에 관리비까지 포함될 경우 모두 합하여 월세에 포함, 기입하여 주십시오.
 3) 사글세나 일세를 내는 경우, 월평균 월세로 환산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 점유 형태

- 현재 살고 있는 거처의 점유형태에 대해 조사한다.
- 땅(토지)은 국가, 지자체 등의 소유이고, 거처는 자신 소유인 경우 '①자가'에 기입한다.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에 대해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응답한다.

구 분	내 용
자가	• 실제 가구원의 명의(명의 기준)로 되어 있는 집을 말하며 집을 구입한 후 대금이 완불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 ※ 토지: 타인 소유, 건물: 본인(부모) 소유일 경우 → 자가
전세	• 일정액의 현금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세금을 내고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	•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
보증금 없는 월세	•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액의 집세를 내는 경우
사글세	• 6개월 또는 1년 동안 일정한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일정액의 집세를 감하는 경우, 대학가의 경우 연세 임대가 많음
일세	• 집이나 방을 빌려 쓰고 매일 집세를 내는 경우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 가구주나 가구원이 소유한 집이 아니고 다른 가구를 이루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임차료나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함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혹은 교통안전관리공단 등에서 무이자로 전세금을 전액 지원하여 집을 얻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하여 표기함



- ▶ 무이자로 전세금 전액지원을 받은 경우 → '⑦무상'
- ▶ 무이자로 전세금 전액지원을 받았지만 이자형식으로 매달 얼마씩 본인이 지불하는 경우 → '④보증금 없는 월세'
- ▶ 전세금을 2/3지원 받고, 본인이 전세금(1/3) + 이자형식으로 매달 얼마씩 지불하는 경우 → '③보증금 있는 월세'

❖ 주택 가격 및 주거비 금액

- 주택의 가격은 2022.11.17.을 기준 시점으로 하며, 집을 판다고 가정할 때의 금액을 말한다.
- 점유형태가 전세의 경우 입주 당시의 전세 보증금을 기입함. 재계약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최종계약서 상의 전세 보증금을 기입한다.
- 점유형태가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입주 당시의 보증금과 한 달 분 월세를 기입한다.
 - ※ 재계약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최종계약서 상의 보증금과 한 달 분 월세를 기입
- 점유형태가 보증금 없는 월세의 경우 한 달 분 월세 가격만 기입한다.
- 사글세 또는 일세의 경우 사글세는 한 번에 낸 금액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기입하고 일세의 경우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여 기입한다.

※ 고시원·고시텔 등 월세에 주거관리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 문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11 귀택의 **월평균 주거관리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동절기, 간절기, 하절기로 구분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관리비에는 가스/전기 등 공과금 등을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1) 동절기(12월~3월)	월 평균 ()만원
2) 간절기(4월~5월, 10월~11월)	월 평균 ()만원
3) 하절기(6월~9월)	월 평균 ()만원

※ 주거 관리비: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등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 **월평균
주거관리비**

-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상적인 주택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화재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 ※ 단, 임대료나 보일러 교체와 같은 일상적이지 않은 주택수선·유지비는 제외
 - ※ 주거관리비는 가스/전기 등 공과금 등을 포함하여 응답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서는 특히 일반관리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일반관리비 예시: 공용관리비, 경비용역비, 청소비 등 개별호수에서 사용한 항목이 아닌 공동관리를 위해 청구된 비용
- 월평균 주거관리비는 동절기(12월~3월), 간절기(4월~5월, 10월~11월), 하절기(6월~9월)로 기간에 따라 나누어 조사한다.
- 절기 중 현재 거처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무응답(9999)으로 처리한다.



12 귀택은 지난 1년 간(2021. 11. 17. ~ 2022. 11. 16.) 월세 혹은 관리비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한 적이 있으십니까?

1 한 번도 없다

2 1~2회 연체한 적이 있다

3 3~4회 연체한 적이 있다

4 5회 이상 연체한 적이 있다

❖ 주거비(월세) 및 관리비 연체 경험

- 월세나 관리비 둘 중 하나라도 연체한 사람을 대상으로, 두 가지 주거비용 중 가장 오래 연체된 기간을 기준으로 응답한다.
- 자가 혹은 전세 응답자의 경우 관리비(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상적인 주택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화재보험료 등을 포함) 연체 경험에 대한 응답만 하도록 함.

13 귀택이 현재 거처에서 거주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1** 일자리(직장, 공장, 농장 등) 혹은 학교(학원)와 가까워서
- 2** 가족, 친지 혹은 지인이 근처에 거주하고 있어서
- 3** 취업 혹은 자격증 시험 준비 등을 위해서
- 4** 독립된 개인 공간이 필요해서
- 5** 대출 혹은 신용 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 6** 이혼이나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 7** 이 곳보다 더 저렴한 월세를 찾기 어려워서
- 8**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
- 9** 기타 ()

❖ 주거비(월세) 및 관리비 연체 경험

- 현 거처를 선택한 주된 이유에 대해 순서대로 1, 2, 3순위를 모두 작성한다.
- 목돈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현 거처를 선택한 경우는 ‘이 곳보다 더 저렴한 월세를 찾기 어려워서’의 이유에 해당된다.

- 응답자가 결혼으로 현재의 거처에 살게 된 경우는 현재 거처에 거주하게 된 이유에 대해 여러 이유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저렴한 집을 구해서인 경우는 ‘이 곳보다 더 저렴한 월세를 찾기 어려워서’ 등의 이유에 해당되며, 결혼 후 배우자의 직장을 따라 살게 되었다면 ‘일자리(직장, 공장, 농장 등)와 가까워서’의 이유에 포함된다.

14 귀댁은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생활하시기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월세 및 관리비 등 주거비가 부담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실내 공간이 생활하기에 너무 비좁다	①	②	③	④	⑤
3) 외롭고 주변으로부터 고립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갈등이나 다툼)	①	②	③	④	⑤
5) 기초생활시설(화장실, 부엌, 욕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6) 사생활 보호가 안된다	①	②	③	④	⑤
7) 실내외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치는 등 늘 시달린다	①	②	③	④	⑤
8) 건물이 오래되어 낡고 시설설비 수준이 열악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실내 공기가 탁해서 답답하고 숨쉬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0) 맘 놓고 거주하기 불안하다(임대인의 퇴거 요구나 무리한 월세 인상 등)	①	②	③	④	⑤

❖ **현 거처에서 느끼는 어려움**

- 현 거처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단계로 구분해 응답자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조사한다.



15 귀택이 현재 거주하는 거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우며 계속 살아도 좋은 곳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지금의 형편으로 현 거처보다 더 좋은 곳을 찾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 잠시(1~2년) 동안은 거주할 만 하다	①	②	③	④	⑤
4) 혼자 살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달리 갈 곳 없어 어쩔 수 없이 막막하게 살고 있는 곳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생애 마지막 거처가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7) 마음을 터놓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이웃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현 거처 유지에 대한 응답자의 자발성 여부**

- 현 거처 유지에 대한 응답자의 자발성 여부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단계로 구분해 응답자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조사한다.

16 귀택은 현재 거처 이외의 다른 곳에 집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 가구원 중 한 사람이라도 집(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에 해당합니다.

1 예



16-1 (문 16 번, 예라고 응답한 경우) 귀택은 언제든 소유한 집으로 되돌아가서 거주할 여건이 되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2 아니요

❖ **현 거처 이외 주택 보유 여부**

- 현재 살고 있는 거처 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일반주택)이 있는지 조사한다. 현재 거처와 같은 주택이외의 거처를 의미하지 않고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일반주택을 의미한다.
- 주택 소유 여부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가구원 중 누구라도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 예’로 기입한다.
- 현재 살고 있는 거처만을 소유하고 있으면 ‘2 아니요’에 기입한다.

- ❖ **현재 거처 이외 보유 주택에서의 거주 여건**
 - 현재 살고 있는 거처 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일반주택)이 있는지를 묻는 **16** 번 문항에서 ‘**1** 예’에 응답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17 귀댁 가구주의 **지난 1년간(2021.11.17.~2022.11.16.)** 고용 상태는 다음 보기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주된 일자리 순으로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주된 일자리는 지난 1년 간 가장 오랜 기간 종사한 일자리를 말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1 상용직 임금 근로자
- 2 임시직 임금 근로자
- 3 일용직 임금 근로자
- 4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 5 고용주
- 6 자영업자
- 7 무급가족 종사자
- 8 실업 상태 (일할 수 있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함)
- 9 일하지 않음: 학생 (대학, 대학원 등 재학 중), 진학 준비, 취업준비, 은퇴 등
- 10 일할 수 없음: 아이 돌봄, 가족 간병과 간호, 고령, 질병, 장애 등

- ❖ **고용 상태**
 - 고용 상태는 지난 1년(2021.11.17.~2022.11.16.)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지난 1년간의 고용 상태에 대하여 오랜 기간 종사한 고용 형태 순으로 작성한다.
 - 자활근로·공공근로자는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분야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자활근로란 자활사업의 하나로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자활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며 자활근로 형태는 간병, 수리, 청소, 재활용, 음식물재활용 같은 5대 표준화 사업과 각 지역에 맞는 사업이 포함된다.



- 공공근로란 실업자 및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구제하는 사업이다. 시, 군, 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
- 노인일자리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주요 노인복지사업이다.

구분	내용
상용직 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 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임시직 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일용직 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 일일단위로 고용되어 근로대가를 일급으로 받는 경우 (파출부 등) • 사업체에서 제공한 원료 및 반제품을 받아다가 가정에서 하청작업하는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자체를 직접 구입하여 가정에서 작업하면 자영자로 분류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함
무급가족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사대상 기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함 •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제활동상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시간이상 일함 : 취업자 - 18시간미만 일함 :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 무급으로 비혈연가구원의 일을 돕거나, 가구를 달리는 가족 일을 돕는 것은 취업자에 해당되지 않음
실업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기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 • 구직기간 4주 기준은 '99년 6월부터 작성하였으며, 이전에는 구직기간 1주기준을 적용

18 귀하를 포함하여 귀댁 가구원 전원의 소득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 소득은 지난 1년간(2021년 11월~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가구원 전원의 소득 유형〉	해당 여부	금 액
1) 근로 및 사업 소득	① 있다 ② 없다	월평균 ()만원
2) 재산 소득 (부동산 소득, 사적 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① 있다 ② 없다	월평균 ()만원
3) 사회보험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① 있다 ② 없다	월평균 ()만원
4) 정부 지원금(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양육수당 등)	① 있다 ② 없다	월평균 ()만원
5) 부모, 자녀, 친지 등으로부터 받음	① 있다 ② 없다	월평균 ()만원
합계(1 ~ 5)		월평균 ()만원

※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은 재산 소득이 포함
 ※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공적 연금, 보훈연금(간호수당, 고엽제후유증증환자수당, 군인사망보험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내정착금, 부가연금, 사망일시금, 생명조정수당 등),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 산재보험(휴업급여, 장재연금, 유족급여 등)이 포함

❖ **가구 소득**

- 지난 해(2021.1.1.~12.31.) 소득의 월평균 금액으로 응답 받는다.
- 세금 등을 제하고 난 실수령액을 응답 받는다.
- 비정상소득을 제외하고, 모두 월평균 액수로 응답 받는다. 응답자가 연소득으로 응답할 경우 12로 나누어 기입한다.
- 비정상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이므로 월평균이 아닌 연총액으로 응답 받는다.
- 월평균 총 정상소득은 소득 별 합계로 자동 계산되지만, 응답자에게 월평균 총 정상소득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란에 소득 유형을 구분하여 기입하도록 한다.
 - ※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이므로 소득에서 제외한다.

■ **근로 및 사업소득**

- 근로(일)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상여금 등을 포함한다.
- 함께 거주하는 가구 구성원 전원에 대한 소득을 응답 받는다.



■ 재산소득

- 부동산소득: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등을 포함한다. 단,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다. 단, 주택연금과 농지 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금융소득: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등을 포함한다. 단, 자산의 가치가 변화했다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회보험

- 사회보험 수혜금에는 공적연금과 사회보험금(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해당한다.
 -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보훈연금* 등이 포함
 - * 보훈연금에는 간호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군인사망보상금, 기본연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내정착금, 부가연금, 사망일시금, 생명조정수당 등이 포함
 -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보훈연금* 등이 포함
 -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이 포함
 - 산재보험에는 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등이 포함

■ 정부지원금

- 정부보조금 종류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	②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③ 기초연금(구.기초노령연금)	④ 한부모가족 지원
⑤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⑥ 양육수당(영유아 양육지원)	⑦ 아동수당
⑧ 보육료 지원(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i-사랑 카드, 아이즐거움 카드)	
⑨ 학비 지원(농림부 지원 포함)	⑩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보훈연금 제외)
⑪ 농어업 정부보조금	
⑫ 기타(긴급복지 지원금, 기타 바우처 지원금, 근로장려세제, 급식비 지원,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 등)	
- 현물로 받은 보조금의 경우(학비, 보육료 등)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입

■ 사적이적소득(부모, 자녀, 친지 등으로부터 받음)

-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 친척, 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포함
- 이웃, 복지관, 종교 및 사회단체(학교, 장학금 포함), 회사(자녀 학자금 보조 포함) 등 민간부분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 환산액) 지원금을 포함

19 귀댁은 현재 소득 수준으로 생활하시기 어떠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여가,취미,문화 활동 등을 하며 여유있게 생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겨우 평균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뿐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끼니를 거르는 등 생계 유지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4) 매달 월세를 내느라 늘 생활이 쪼들린다	①	②	③	④	⑤
5) 일해서 벌어도 대출금 등 빚을 갚느라고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 ❖ **현 소득수준 대비 생활 여건**
 - 현 소득수준 대비 생활 여건에 대해 각 항목별로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단계로 구분해 응답자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조사한다.



20 귀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재의 거처에 거주할 계획이십니까?

1 예 →

20-1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고령 또는 건강 문제로 이주 불가 | 2 주거비가 저렴해서 |
| 3 통근·통학에 좋은 위치 | 4 이웃, 주변 사람들과의 친분 유지 |
| 5 동네 환경이 살기 편하고 좋아서 | 6 돌봄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잘 지원받고 있어서 |
| 7 기타() | |

2 아니오 →

20-2 이주를 계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지금보다 더 나은 거처로 가기 위해서 | 2 더 저렴한 곳으로 가기 위해 |
| 3 일하는 곳이 바뀐(이직, 전근, 재취업 준비 등) | 4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 |
| 5 주택 구입(새 집 분양, 기존 주택 매입) | 6 가족·친지와 함께 살거나 인근에 살기 위해서 |
| 7 시설(요양원, 병원 등)에 가기 위해서 | 8 기타() |

❖ 거주 계획

- 현 거처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인지 조사한다. 특정기간을 한정하지 않는다.
- 다른 거처로 이사할 계획이 없는 경우도 계속 거주할 의사를 조사한다.
- ‘**2** 아니오’ 로 응답하는 경우는 이주할 거처가 구체적으로 마련된 사항을 의미하며 이주 비용이나 거처 마련 비용이 없는 막연한 희망 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 현 거처 계속 거주 이유

- **20** 번에 ‘**1**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조사한다.
- 보다 나은 거처로 이주할 만한 자금이 없어 계속 거주하는 경우는 ‘**2** 더 저렴한 곳으로 가기 위해’로 응답한다.

❖ 이주계획 이유

- **20** 번에 ‘**2**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조사한다.
-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임대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IV. 주거 및 사회복지 지원 요구도

21 귀댁은 더 나은 주거를 찾기 위해 관련 정보제공 및 주거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

21-1 어디에서 정보제공 및 상담을 받으셨습니까?

- | | |
|-------------------|----------------|
| 1 읍면동 주민센터 | 2 시군구청 |
| 3 주거복지센터 | 4 복지관 |
| 5 쪽방상담소 | 6 기타() |

2 아니오 →

21-2 정보제공이나 주거 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나의 신상 정보(성명, 주소지, 주민번호, 직업, 신용 문제 등)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져서
- 2** 집 찾는 정보 제공이나 주거 상담과 같은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 3**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 줄 알고 있지만 필요하지 않아서
- 4**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몰라서
- 5** 기타()

❖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경험

- 주거 관련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다.
- 응답자의 현재 상황에서 주거관련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 주택 내부의 상태가 매우 열악하거나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타 의견 등에 구체적인 지원 필요 사항을 기술한다.

❖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경로

- **21** 번에 ‘**1**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조사한다.
-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제공을 해준 기관을 조사한다.

❖ 정보제공이나
주거 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

- **21** 번에 ‘**2**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조사한다.
-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제공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다.
- 큰 문제 없어보임. 조사 진행 가능.



22 다음은 정부(중앙정부, 지자체)가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주거복지 프로그램들입니다. 귀책은 이러한 프로그램 중 **최근 5년 내 지원받은 프로그램**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

22-1 (문 22번, 없다고 응답한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 2**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 3**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 4** 관심이 없어서
- 5** 지원을 받아도 추가 비용이 부담되어서
- 6**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
- 7** 기타()

<정부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 ① 주택구입자금 대출 ② 전세자금 대출 ③ 월세 대출 ④ 청년 주거급여(월세 지원)
 - ⑤ 주거급여 수급자 ⑥ 주택개량, 집수리
 - ⑦ 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
 - ⑧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제반 비용 지원 (이사비, 가구집기 등 지원)
 - ⑨ 주택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 ⑩ 그 외 ()
- ※ ①과 ②의 경우, 시중 은행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혹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받은 대출에 한함

❖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 경험

● 현재 정부(중앙정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거나 최근 5년 내 지원 받은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서 조사한다.

① 주택구입자금 대출

–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

② 전세자금 대출

– 전세 자금이 필요할 때, 이를 대출해 주는 제도

③ 월세 대출

– 월세 자금이 필요할 때, 이를 대출해 주는 제도

④ 청년 주거급여(월세 지원)

⑤ 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가구(임차가구)의 임차료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

⑥ 주택개량, 집수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가구(자가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무료로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

- ⑦ 공공임대주택 입주
 - 공공이 직접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임대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⑧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제반 비용 지원
- ⑨ 주택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 ❖ 주거복지 프로그램 지원 받지 못한 이유
 - 22번에 ‘2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조사한다.
 -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다.

23 귀댁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

23-1 입주 의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자격기준이 안되어서(주택소유, 소득수준 등) 2 위치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 3 임차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서 4 월 임차료와 관리비가 부담되어서
- 5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계속 살고 싶어서 6 기타()

- ❖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
 - 향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다.

- ❖ 공공임대주택 기피 이유
 - 23번에 ‘2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조사한다.
 - ‘위치나 좋지 않을 것 같아서’는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원하는 지역이 아닌 경우 등을 예로 설명할 수 있다.
 - 3, 4의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보증금과 월세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나누어 확인한다. 보증금은 마련이 되나 매월 월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매월 월세는 부담가능하나 보증금 정도의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24 주거지원 이외에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1 생계급여와 같은 소득 지원
- 2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일자리 지원
- 3 일상 생활 지원(가사일, 이동 지원, 목욕 등 활동 보조)
- 4 간호, 간병 등 의료 지원
- 5 채무조정·파산면책 등에 대한 지원
- 6 창업 자금 등 대출 지원
- 7 기타 ()

❖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 주거지원 이외에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조사한다.

25 귀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가구입니까?

1 예 → **25-1** 귀택이 받고 있는 급여의 종류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급여 종류	수급 여부	수급 금액
생계급여	① 수급 ② 비수급	
의료급여	① 수급 ② 비수급	
주거급여	① 수급 ② 비수급	월평균 () 만원
교육급여	① 수급 ② 비수급	

* 6개월 이상 임차급여를 수령한 경우, 6개월 평균 금액을 기입, 6개월 미만인 경우 9월의 임차급여 금액을 기입)

2 아니오 → **25-2** 번으로 이동

25-2 귀택은 수급 신청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1 예 → **25-2-1**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
- ② 부양의무자 있음
- ③ 모르겠음
- ④ 기타()

2 아니오 → **25-2-1**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 ② 신청 절차를 몰라서
- ③ 자격기준이 안될 것 같아서
- ④ 여기 산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 ⑤ 정부지원을 받고 싶지 않아서
- ⑥ 기타()

❖ 수급가구 여부

- 수급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로 지정되어 ①생계급여, ②의료급여, ③주거급여, ④교육급여 등을 제공받는 가구를 의미한다. 이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으면 수급자로 조사한다.
- 다음을 참조 확인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천 단위에서 반올림)〉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5	3,260	4,195	5,121	6,025	6,907
교육급여 (중위 50%)	583	978	1,258	1,536	1,807	2,072
주거급여 (중위 43%)	778	1,304	1,678	2,048	2,410	2,763
의료급여 (중위 40%)	595	1,500	1,930	2,356	2,771	3,177
생계급여 (중위 29%)	972	1,630	2,097	2,561	3,012	3,454

❖ 수급 항목

- 25 번에 '1 예'에 응답한 경우에만 조사한다.
- 수급받고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① 있다'에 체크한다.

❖ 월평균
주거급여
수급금액

- 주거급여
 - 임차가구의 경우, 아래 표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매달 전월세 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의 일부를 지원받음
 - ※ 기준임대료는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한 지급가능한 지원금액이며, 서울에 사는 1인의 경우 최대 월 32만 7천원까지 받을 수 있음
 - ※ 다음 페이지 표 참조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리를 지원함

❖ 수급 신청
여부

- 25 번에 '2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만 조사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다.

❖ 선정되지
않은 이유

- 25 번에 '2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만 조사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다.

❖ 신청하지
않은 이유

- 25 번에 '2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만 조사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다.

26 귀댁 가구주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년생, 만 ()세

❖ 가구주 연령

- 조사기준시점(2022.11.17.) 기준의 만 나이에 대하여 응답을 받으며, 생년과 만 나이 모두 응답을 받는다.

27 귀하를 포함하여 귀 댁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명

❖ 가구원 수

- 실제 동거하는 가구원 모두에 대해 조사한다.
※ 2022년 11월 17일 기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가구원(본인 포함)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 가구원

- 가구원은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되며,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제외한다.
- 먼 친척, 친구, 가정부, 종업원 등 가족이 아닌 사람도 함께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한다.
-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최근 3개월 이상 되었고, 조사당시에도 함께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된다.
- 가구원 명부 포함 여부

〈가구원 명부 포함 여부〉

가구원 명부 포함	가구원 명부 제외
1. 출장이나 여행으로 잠시 집을 떠나 있는 가구원	1. 취업, 취학, 군대 입소 등으로 외지에서 하숙, 자취하거나 기숙사에 있는 가구원
2. 잠시 친척집에 가 있는 가구원	2. 보육원, 노인요양시설, 모자원 등의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가구원
3. 일반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및 보호자인 가구원(기간 불문)	3. 선박, 항공기, 철도 등의 승무원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원
4. 3개월 미만 거주 예정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가구원	4. 구직, 무단가출 등으로 정착여부를 알 수 없는 집을 떠난 지 1개월이 넘는 가구원
	5. 타지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만 집에 오는 가구원(주말부부)



28 귀하를 포함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이 아래 해당할 경우 해당 사항을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 분		해당 여부	인원 수
연령	1) 영유아 (만 6세 미만)	① 있다 ② 없다	()명
	2) 초, 중, 고등학생 (만 7세 ~ 만 18세)	① 있다 ② 없다	()명
	3) 65세 이상 고령자	① 있다 ② 없다	()명
활동상태	4) 장애 등으로 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명
	5)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명

※ 혼자 거동이 불편한 경우: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어나고, 옷 입고, 씻고, 화장실 가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 만성 질환자: 암, 관절염, 위염, 당뇨, 갑상선 질환, 고혈압, 중풍, 심근경색, 폐결핵, 천식, 골다공증, 우울증 등으로 현재 투병, 투약을 하고 있는 상태

❖ **고령 및 장애 여부**

- 가구원 모두에 대해 연령, 활동 상태(장애, 만성질환)에 해당하는 항목을 조사한다.
 - ※ 2022년 11월 17일 기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 ※ 조사표 작성자를 포함함에 주의한다.
- 장애 등으로 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란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어나고, 옷 입고, 씻고, 화장실 가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 ※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이라도 혼자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있다고 응답
-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란 암, 관절염, 위염, 당뇨, 갑상선 질환, 고혈압, 중풍, 심근경색, 폐결핵, 천식, 골다공증, 우울증 등으로 현재 투병, 투약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9 귀택의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가족(친척포함)으로 이루어진 가구
- 2 가족(친척포함)과 남이 함께 사는 가구
- 3 1인 가구
- 4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5 기타()

29-1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니까?

- 1 부부가구
- 2 부모+자녀가구
- 3 조부모+부모+자녀가구
- 4 조손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 5 만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한부모가구
- 6 기타()

❖ 가구 형태

-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한다.
- 주민등록상의 '세대'가 아닌, 현재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 가족에는 이모, 고모, 삼촌 등 친척이 포함된다.
- 가족이외의 5인 이하 하숙생은 가구원에 포함된다.
- 군복무나 직장으로 인해 타지에 떠나 있는 가족은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 친척이 같은 집에 살고 있더라도 취사, 취침 등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가구로 분리하여 조사한다.
-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는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조사대상이지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 가구는 집단가구로 조사대상이 아니다.

❖ 가구(가족) 유형

- 29 번에 '1 가족(친척 포함)으로 이루어진 가구'로 응답한 경우에만 조사한다.
- 2 번과 3 번의 부모와 조부모는 '부'나 '모' 중 한 분만 있어도 가능하다.
- 만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한부모가구, 조손가구만 4, 5에 해당한다. 18세 이상의 자녀와 한부모가 사는 경우는 6에 해당한다.
- 가족에 이모, 고모, 삼촌, 조카 등의 친척이 포함된 경우는 기타로 조사한다.



30 귀택에서 **가구주의 혼인 상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1 미혼

2 배우자 있음

3 사별

4 이혼

❖ **가구주 혼인상태**

- 혼인신고 등 법률상의 혼인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혼인 상태를 조사한다.
- 혼인 상태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연령과 관련이 많으므로 반드시 연령과 비교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미혼

- 한 번도 결혼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해당된다.

2 배우자 있음

- 혼인하여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동거)도 포함한다.

- 이혼 후 재혼한 경우 '배우자 있음'에 기입한다.

3 사별

- 혼인은 하였으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현재 혼자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광복 전 또는 한국전쟁 당시 배우자가 납치 또는 실종된 사람은 사별로 간주한다.

- 재혼하였으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현재 혼자 살고 있는 경우 '**4** 사별'에 기입한다.

4 이혼

- 혼인 후 배우자와 헤어져서 현재 혼자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재결합이 예상되지 않는 별거도 포함한다.

31 귀택 **가구주의 주민등록은 어디에 등재되어 있습니까?**

1 현재의 거처에

2 현재 거처와 같은 시·군·구의 다른 거처에

3 현재 거처와 다른 시·군·구에

4 주민등록 말소 상태

❖ **가구주 주민등록 등재**

- 가구주의 주민등록 등재 지역을 조사한다.

32 귀택 가구원 중 통장 개설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가구원 중
금융채무불이행자
유무**

- 가구원 중에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가 있는지 조사한다.
 -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거나 50만 원 이하 2건 이상을 연체한 경우 은행 등 거래가 정지된다.

IV

내용검토 및 정리·제출

- 1 내용검토란?
- 2 내용검토 사항
- 3 조사표 편철 및 제출
- 4 편철 조사표 수집 및 제출



VI

내용검토 및 정리·제출

1 내용검토란?

- 조사표가 지침서에 따라 정확하게 기입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으로서 개별문항 사이의 논리적 오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임

2 내용검토 사항

- 지시문에 따라 기입되어야 할 문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건너뛰어야 할 항목을 조사하였는지 확인한다.
- 단일선택인데 복수응답을 하였는지 확인한다.
- 순위로 응답하는 항목은 번호순이 아닌 우선순위로 응답했는지 확인한다.
- 숫자를 기입하는 문항의 경우,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응답내용이 변경된 경우 정확히 수정하고 자료입력 시 착오가 없도록 주의한다.
- 지정된 항목으로 표시된 경우 해당 없는 항목은 사선 처리한다.
- 조사항목 간 상관관계가 논리적으로 잘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 각 항목별로 응답항목에 '✓' 표시하며, 해당 번호가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한다.

3 조사표 편철 및 제출

- 조사원은 각 권별로 편철표지 양식을 기입하여 지역센터장에게 완료된 조사표를 제출한다.
- 제출 시 조사원별 및 행정구역별로 총 편철 가구수, 지역본부, 센터명과 조사원명 등을 편철 표지에 기입하고 수정 보완된 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4 편철 조사표 수집 및 제출

- 조사센터장은 조사원별 및 행정구역별로 편철 조사표를 수집하여 조사표 보관 박스에 총 상자수, 총 편철권수, 지역센터명 등을 보관 박스 위에 기입하여 지역본부에 제출한다.
 - 기 한 : 12월 30일(금)까지
 - 제출서류 : 조사표, 조사대상 명부
- 지역본부장은 송부된 조사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조사표를 보관한다.
- 지역본부는 수집된 조사표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부 록

1 조사표





V

부 록

1 조사표



승인번호
제 116075 호

2022년 주택이외거처 주거실태조사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귀하가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제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보다 나은 환경 조성과 주거정책의 수립시 귀중한 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이 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주거실태조사)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첫 조사를 하였고 금번 2022년은 두 번째로 시행하는 조사입니다. 조사 기간은 2022년 11월 17일에서 12월 11일까지 입니다. 조사원 방문시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표지 부분은 조사원이 적습니다.

응답자 ID

통계작성기관	국토교통부	조 사 수 탁 (용역) 기 관	주관	LH 토지주택연구원
문 의 처	한국통계진흥원 조사관리부 콜센터		수행	한국통계진흥원
				☎ 070-4128-3227

주 소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로(길) _____
 ※ 실거주지 기준

응답일시	월 일 시 분	응답 소요 시간	1 20분 이내 3 30분~40분 2 20분~30분 4 40분 이상
조 사 표 작성방법	1 조사원 면접식 2 자기 기입식	조 사 원 성 명	연 락 처





5 귀택이 거주하는 거처에서 **귀택이 실제 사용하는 방**은 몇 개입니까? (거실, 부엌, 욕실 등은 제외)

- 1 원룸형 2 방 1개 3 방 2개 4 방 3개 5 방 4개 이상

6 귀택이 거주하고 있는 **거처의 시설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난방시설에 전기담요나 전기난로 등의 전열기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설 종류	시설유무 및 종류	사용형태 및 사용여부
1) 부엌	① 입식 ② 재래식 ③ 없음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2) 화장실	① 수세식 ② 재래식 ③ 없음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3) 목욕시설	① 온수 ② 비온수 ③ 없음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4) 난방시설	① 있음 ② 없음	① 사용 ② 미사용
5) 소방 기구	① 있음 (소화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화재 감지 및 진압을 위한 장치) ② 없음	
6) 출입구(현관문)	① 단독 사용 ② 공동 사용	

7 귀택이 거주하는 **거처의 물리적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거주 면적이 생활하기에 비좁다	①	②	③	④	⑤
2) 창문이 없거나 작아 채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실외(차량 등) 및 실내(옆방, 옆집, 복도, 층간)의 소음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습기와 곰팡이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환기가 잘되지 않고 악취(담배연기, 음식냄새, 하수구 냄새, 매연 등)가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쥐나 바퀴벌레 등으로 위생 상태가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7) 천장, 벽 등에 곰이 가고 물이 새는 곳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건물이 낡아서 붕괴 위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화재의 위험성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10) 난방이나 단열 상태가 좋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II. 거주 여건에 인식과 어려운 점

8 귀택은 현재 거처에 거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현 거처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년 []월부터이다.

9 귀택은 현재 거처에 거주하기 직전에는 어떤 거처 유형에 거주하셨습니까?

- 1 일반 단독주택 2 다가구 단독주택 3 다세대 및 연립주택 4 아파트
- 5 점포(상가) 건물내 주택 6 오피스텔 7 기숙사, 특수사회시설
- 8 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의 객실 9 판잣집, 비닐하우스 10 고시원·고시텔
- 11 다중이용업소: 노래방, PC방, 사우나, 유흥시설 등
- 12 일하는 곳의 일부 공간 (예: 주유소, 미장원, 세탁소, 편의점, 마트, 민박집, 음식점 등 식당 건물 내 일부)
- 13 기타() (예: 학교나 학원 건물, 보건소, 주민센터, 경로당, 성당, 교회, 사찰 등)

9-1 (문 9번 8~13에 해당하는 경우 응답) 귀택은 여기서 얼마나 거주하셨습니까?

[]년 []월 ~ []년 []월 까지 거주

10 귀택이 현재 거주하는 거처의 점유 형태와 가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점유 형태		가격	
건물 소유	① 자가	건물 가액 ¹⁾	[]억 []만원
	② 전세	보증금	[]억 []만원
임 차	③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	[]억 []만원
		월세	[]만원
	④ 보증금이 없는 월세	월세 ²⁾	[]만원
	⑤ 사글세 혹은 일세	월세 ³⁾	[]만원
	⑥ 무상 거주	-	

1) 건물가액은 해당 건물을 2022년 10월말 기준으로 판다고 가정할 때 주변 시세(매매가)를 말함
2) 고시원·고시텔 등 매달 월세에 관리비까지 포함될 경우 모두 합하여 월세에 포함, 기입하여 주십시오.
3) 사글세나 일세를 내는 경우, 월평균 월세로 환산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 고시원·고시텔 등 월세에 주거관리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 문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11 귀댁의 월평균 주거관리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동절기, 간절기, 하절기로 구분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관리비에는 가스/전기 등 공과금 등을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1) 동절기(12월~3월)	월 평균 ()만원
2) 간절기(4월~5월, 10월~11월)	월 평균 ()만원
3) 하절기(6월~9월)	월 평균 ()만원

※ 주거 관리비: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등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12 귀댁은 지난 1년 간(2021. 11. 17. ~ 2022. 11. 16.) 월세 혹은 관리비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한 적이 있으십니까?

- 1 한 번도 없다
- 2 1~2회 연체한 적이 있다
- 3 3~4회 연체한 적이 있다
- 4 5회 이상 연체한 적이 있다

13 귀댁이 현재 거처에서 거주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1 일자리(직장, 공장, 농장 등) 혹은 학교(학원)와 가까워서
- 2 가족, 친지 혹은 지인이 근처에 거주하고 있어서
- 3 취업 혹은 자격증 시험 준비 등을 위해서
- 4 독립된 개인 공간이 필요해서
- 5 대출 혹은 신용 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 6 이혼이나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 7 이 곳보다 더 저렴한 월세를 찾기 어려워서
- 8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
- 9 기타 ()



14 귀택은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생활하시기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월세 및 관리비 등 주거비가 부담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실내 공간이 생활하기에 너무 비좁다	①	②	③	④	⑤
3) 외롭고 주변으로부터 고립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갈등이나 다툼)	①	②	③	④	⑤
5) 기초생활시설(화장실, 부엌, 욕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6) 사생활 보호가 안된다	①	②	③	④	⑤
7) 실내외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치는 등 늘 시달린다	①	②	③	④	⑤
8) 건물이 오래되어 낡고 시설설비 수준이 열악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실내 공기가 탁해서 답답하고 숨쉬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0) 맘 놓고 거주하기 불안하다(임대인의 퇴거 요구나 무리한 월세 인상 등)	①	②	③	④	⑤

15 귀택이 현재 거주하는 거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우며 계속 살아도 좋은 곳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지금의 형편으로 현 거처보다 더 좋은 곳을 찾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 잠시(1~2년) 동안은 거주할 만 하다	①	②	③	④	⑤
4) 혼자 살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달리 갈 곳 없어 어쩔 수 없이 막막하게 살고 있는 곳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생애 마지막 거처가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7) 마음을 터놓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이웃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귀택은 현재 거처 이외의 다른 곳에 집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 가구원 중 한 사람이라도 집(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에 해당합니다.

- 1 예 → **16-1** (문 16 번, 예라고 응답한 경우) 귀택은 언제든 소유한 집으로 되돌아가서 거주할 여건이 되십니까?
- 1 그렇다
 - 2 아니다
- 2 아니오



III. 고용 상태와 생활 여건

17 귀댁 가구주의 **지난 1년간(2021.11.17.~2022.11.16.)** 고용 상태는 다음 보기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주된 일자리 순으로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주된 일자리는 지난 1년 간 가장 오랜 기간 종사한 일자리를 말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1 상용직 임금 근로자
- 2 임시직 임금 근로자
- 3 일용직 임금 근로자
- 4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 5 고용주
- 6 자영업자
- 7 무급가족 종사자
- 8 실업 상태 (일할 수 있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함)
- 9 일하지 않음: 학생 (대학, 대학원 등 재학 중), 진학 준비, 취업준비, 은퇴 등
- 10 일할 수 없음: 아이 돌봄, 가족 간병과 간호, 고령, 질병, 장애 등

18 귀하를 포함하여 **귀댁 가구원 전원의 소득**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 소득은 지난 1년간(2021년 11월~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가구원 전원의 소득 유형〉	해당 여부	금 액
1) 근로 및 사업 소득	① 있다 ② 없다	월평균 ()만원
2) 재산 소득 (부동산 소득, 사적 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① 있다 ② 없다	월평균 ()만원
3) 사회보험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① 있다 ② 없다	월평균 ()만원
4) 정부 지원금(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양육수당 등)	① 있다 ② 없다	월평균 ()만원
5) 부모, 자녀, 친지 등으로부터 받음	① 있다 ② 없다	월평균 ()만원
합계(1 ~ 5)		월평균 ()만원

※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은 재산 소득이 포함

※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공적 연금, 보훈연금(간호수당, 고엽제후유증증환자수당, 군인사망보험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내정착금, 부가연금, 사망일시금, 생명조정수당 등),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 산재보험(휴업급여, 장제연금, 유족급여 등)이 포함

19 귀택은 현재 소득 수준으로 생활하시기 어떠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여가,취미,문화 활동 등을 하며 여유있게 생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겨우 평균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뿐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끼니를 거르는 등 생계 유지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4) 매달 월세를 내느라 늘 생활이 쪼들린다	①	②	③	④	⑤
5) 일해서 벌어도 대출금 등 빚을 갚느라고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20 귀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재의 거처에 거주할 계획이십니까?

1 예 →

20-1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고령 또는 건강 문제로 이주 불가
- 2 주거비가 저렴해서
- 3 통근·통학에 좋은 위치
- 4 이웃, 주변 사람들과의 친분 유지
- 5 동네 환경이 살기 편하고 좋아서
- 6 돌봄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잘 지원받고 있어서
- 7 기타()

2 아니오 →

20-2 이주를 계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지금보다 더 나은 거처로 가기 위해서
- 2 더 저렴한 곳으로 가기 위해
- 3 일하는 곳이 바뀐(이직, 전근, 재취업 준비 등)
- 4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
- 5 주택 구입(새 집 분양, 기존 주택 매입)
- 6 가족·친지와 함께 살거나 인근에 살기 위해서
- 7 시설(요양원, 병원 등)에 가기 위해서
- 8 기타()





IV. 주거 및 사회복지 지원 요구도

21 귀댁은 더 나은 주거를 찾기 위해 관련 정보제공 및 주거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

21-1 어디에서 정보제공 및 상담을 받으셨습니까?

- | | |
|-------------------|----------------|
| 1 읍면동 주민센터 | 2 시군구청 |
| 3 주거복지센터 | 4 복지관 |
| 5 쪽방상담소 | 6 기타() |

2 아니오 →

21-2 정보제공이나 주거 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나의 신상 정보(성명, 주소지, 주민번호, 직업, 신용 문제 등)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져서
- 2** 집 찾는 정보 제공이나 주거 상담과 같은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 3**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 줄 알고 있지만 필요하지 않아서
- 4**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몰라서
- 5** 기타()

22 다음은 정부(중앙정부, 지자체)가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주거복지 프로그램들입니다. 귀댁은 이러한 프로그램 중 최근 5년 내 지원받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1 있다

22-1 (문 22 번, 없다고 응답한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프로그램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 2** 신청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 3**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 4** 관심이 없어서
- 5** 지원을 받아도 추가 비용이 부담되어서
- 6**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
- 7** 기타()

2 없다 →

<정부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 | | | | |
|---|--------------------|----------------|-------------------------|
| ① 주택구입자금 대출 | ② 전세자금 대출 | ③ 월세 대출 | ④ 청년 주거급여(월세 지원) |
| ⑤ 주거급여 수급자 | ⑥ 주택개량, 집수리 | | |
| ⑦ 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 | | | |
| ⑧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제반 비용 지원 (이사비, 가구집기 등 지원) | | | |
| ⑨ 주택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 | | |
| ⑩ 그 외 () | | | |

※ ①과 ②의 경우, 시중 은행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혹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받은 대출에 한함

23 귀댁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1 예

23-1 입주의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자격기준이 안되어서(주택소유, 소득수준 등) | 2 위치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
| 3 임차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서 | 4 월 임차료와 관리비가 부담되어서 |
| 5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계속 살고 싶어서 | 6 기타() |

2 아니오 →

24 주거지원 이외에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1 생계급여와 같은 소득 지원
- 2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일자리 지원
- 3 일상 생활 지원(가사일, 이동 지원, 목욕 등 활동 보조)
- 4 간호, 간병 등 의료 지원
- 5 채무조정·파산면책 등에 대한 지원
- 6 창업 자금 등 대출 지원
- 7 기타 ()

25 귀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가구입니까?

1 예 → **25-1** 귀택이 받고 있는 급여의 종류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26** 번으로 이동

급여 종류	수급 여부	수급 금액
생계급여	① 수급 ② 비수급	
의료급여	① 수급 ② 비수급	
주거급여	① 수급 ② 비수급	월평균 () 만원
교육급여	① 수급 ② 비수급	

* 6개월 이상 임차급여를 수령한 경우, 6개월 평균 금액을 기입, 6개월 미만인 경우 9월의 임차급여 금액을 기입)

2 아니오 → **25-2** 번으로 이동

25-2 귀택은 수급 신청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1 예 → **25-2-1**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
- 2 부양의무자 있음
- 3 모르겠음
- 4 기타()

2 아니오 → **25-2-1**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 2 신청 절차를 몰라서
- 3 자격기준이 안될 것 같아서
- 4 여기 산다는 것을 알고 싶지 않아서
- 5 정부지원을 받고 싶지 않아서
- 6 기타()



V. 가구 기본사항

26 귀댁 가구주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년생, 만 ()세

27 귀하를 포함하여 귀 댁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명

28 귀하를 포함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이 아래 해당할 경우 해당 사항을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 분		해당 여부	인원 수
연령	1) 영유아 (만 6세 미만)	① 있다 ② 없다	()명
	2) 초, 중, 고등학생 (만 7세 ~ 만 18세)	① 있다 ② 없다	()명
	3) 65세 이상 고령자	① 있다 ② 없다	()명
활동상태	4) 장애 등으로 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명
	5)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명

※ 혼자 거동이 불편한 경우: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어나고, 옷 입고, 씻고, 화장실 가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 만성 질환자: 암, 관절염, 위염, 당뇨, 갑상선 질환, 고혈압, 중풍, 심근경색, 폐결핵, 천식, 골다공증, 우울증 등으로 현재 투병, 투약을 하고 있는 상태

29 귀댁의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가족(친척포함)으로 이루어진 가구 →
- 2 가족(친척포함)과 남이 함께 사는 가구
- 3 1인 가구
- 4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5 기타()

29-1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부부가구
- 2 부모+자녀가구
- 3 조부모+부모+자녀가구
- 4 조손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 5 만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한부모가구
- 6 기타()

30 귀댁에서 가구주의 혼인 상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미혼
- 2 배우자 있음
- 3 사별
- 4 이혼

31 귀택 가구주의 주민등록은 어디에 등재되어 있습니까?

- 1** 현재의 거처에
- 2** 현재 거처와 같은 시·군·구의 다른 거처에
- 3** 현재 거처와 다른 시·군·구에
- 4** 주민등록 말소 상태

32 귀택 가구원 중 통장 개설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응답하신 분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 주십시오.

(연락처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할 내용이 더 있을 경우에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휴대전화	() -
	집 전화	() -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2년

주택이외의거처주거실태조사
조사지침서